

2020년 제5차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 회의 개요

- 일시: 2020. 7. 6.(월) 15:00~16:00
- 장소: 공사 14층 교육실
- 참석위원
 - 문영기, 이창배, 강기언, 이정연, 전진한
 - ※ 배석: 김도은, 정두진, 이현민, 강동수
- 상정안건
 - (의안번호 2020-10) 정보 비공개 결정 1건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
 - (의안번호 2020-11) 정보 비공개 결정 6건에 대한 직권심의
- 회의결과
 - 의안번호 2020-10: 기각
 - 의안번호 2020-11: 비공개 결정 6건 전체 비공개 결정

□ 성원보고

- 재적인원 6명 중 5명이 참석하여 회의 성원이 되었음. (간사)

<의안번호 2020-10 정보 비공개 결정 1건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

□ 위원 발언 내용

- [6847569] 서울시 임대보증금 용자 거절 건 관련 외부 법률자문 결과 - 맞춤주택부

<○○○ 주임>

- 청구인이 공개 요청한 외부 법률 자문 결과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공개될 경우 법률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어 비공개 결정함.
- 법률자문 의뢰내용 및 자문결과서는 행정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판단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자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하고 그 의견을 받은 것으로 의사결정과정에서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자문결과 공개 시 자문변호사들이 자문결과의 공개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 때문에 진솔한 의견을 개진할 수 없고, 의뢰인이 자문결과와 다른 의사결정을 할 경우 쟁송 등이 제기되는 등 새로운 갈등이 야기될 개연성도 있어 해당 정보를 비공개 결정함.

<○○○ 위원>

- 중앙행정심판에서도 법률자문 의뢰내용 및 자문결과서는 업무담당자가 판단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요청하고 그 의견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의사결정과정에서 있는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 본 선례가 있음.
- 정보공개청구의 차원에서는 법률자문 결과를 의사결정과정의 참고자료로 볼 수 있음.

<○○○ 위원>

- 외부 법률자문 의견은 공사가 관리하는 사항이므로 공사에서 공개/비공개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 위원>

-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자문을 받았던 외부 법률자문기관으로부터 제3자 의견서를 받는 것을 권고함.

<○○○ 위원장>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5,7호에 따라 기각 결정함.

<의안번호 2020-11 정보 비공개 결정 6건에 대한 직권심의>

□ 위원 발언 내용

- [6815132] ‘가든파이버 툄동 1층 일괄임대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MOU)체결 계획(안)’ 문서 - 가든파이버활성화추진단(TF)

<○○○ 차장>

- 본 업무협약 내용은 협약 상 비밀유지를 전제로 하고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7호에 의거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판단하여 비공개 결정함.

<○○○ 위원>

- 비밀유지를 해야 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 차장>

- 동 협약의 상대가 관련내용의 언론공개 등을 우려함.

<○○○ 위원>

- 현재 완료된 사항이 아님을 감안하여 비공개 근거 5호를 추가하는 것이 좋겠음.

<○○○ 위원장>

- 비공개 사유 5호를 추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5,7호에 따라 비공개 결정함.

- [6815076] ‘가든파이프 튜동 상가활성화를 위한 TF 운영계획 (안)’ 문서 - 가든파이프활성화추진단(TF)

<○○○ 차장>

- 해당내용은 튜동 활성화를 위한 공사 경영 상 내부 지침과 관련된 내용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되어 비공개 결정함.

<○○○ 위원>

- 앞선 청구건과 마찬가지로 현재 완료된 사항이 아님을 감안하여 비공개 근거 5호를 추가하는 것이 좋겠음.

<○○○ 위원장>

- 비공개 사유 5호를 추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5,7호에 따라 비공개 결정함.

- [6815080] ‘제6기 튜동 관리단 관리위원회 제2차 정기회의 개최 결과보고’ 문서
- [6815097] ‘라이프동 제5기 관리단대표위원회 제28차 정기회의 개최 결과보고’ 문서 - 가든파이프활성화추진단(TF)

<○○○ 차장>

- 상기 두 건에 기재된 회의는 공사 주관 회의가 아닌 참여자로서 참석하고 있고, 공사가 회의 자료를 보유·관리하는 주체가 아니므로 정보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우리공사가 타 법인의 회의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7호에 의거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

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들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여 비공개 처리함.

<○○○ 위원>

- 회의의 주최자가 아닌 참여자인 것이 맞는가?

<○○○ 차장>

- 회의의 주최자는 가든파이프 툴동/라이프동 관리위원회이며, 우리 공사는 여러 참여자 중 일부일 뿐임.

<○○○ 위원장>

- 원안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7호에 따라 비공개 결정함.

- [6821791] ‘항동지구 관련 공유지 무상귀속 협의 회신(광명~서울 2·3, 항동·신월동 구간)’ 문서 - 도시공간기획부

<○○○ 주임>

- 항동 공공주택지구와 관련하여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주민의 오해나 혼란 등이 야기될 수 있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이유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 근거하여 비공개 처리함.

<○○○ 위원>

- 관련내용 공개 시, 부동산 투기나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 주임>

- 해당사항 없음.

<○○○ 위원장>

- 원안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5호에 따라

비공개 결정함.

- [6831666] 성동구치소 일대 개발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보고서, 지구단위계획 - 도시개발계획부

<○○○ 팀장>

- “성동구치소 일대 개발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은 성동구치소 일대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계획 확정을 위해 시행하는 용역임.
- 성동구치소 일대 지구단위계획은 현재 서울시와 진행 중인 사전협상 및 설계공모 결과 등을 반영하여 2020.7월 입안, 주민공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할 예정으로, 향후 지구단위계획 입안에 따른 주민공람 시 공개할 계획임.
- 현재는 계획 수립 중으로 미확정된 개발계획(안)의 사전 공개 시 공공성 미확보 및 특정인 이익 또는 불이익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5,7호에 따라 비공개 처리함.

<○○○ 위원>

- 관련내용에 부동산 투기나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 팀장>

- 포함되어 있음.

<○○○ 위원장>

- 비공개 사유 8호를 추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5,7,8호에 따라 비공개 결정함.